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대한 이해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본란에서는 국가간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통해 상호 의견의 조정을 거쳐 원만한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식품에 대한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기준규격을 설정하는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 대한 소개 및 현황자료(2002. 1월현재)를 게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注〉

I. 서언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UR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1995. 1. 1부터 다자간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시대로 전환되었다. 그 근간이 되는 WTO협정은 전문과 16개 조항 및 4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WTO의 발족에 따라 무역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와 각국은 새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자국의 시장 개방 및 국가간 통상마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일수는 없어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교역량의 확대와 아울러 통상마찰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통해 상호 의견의 조정을 거쳐 원만한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식품에 관한 국제적 통용 기준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하 'CODEX 위원회'라 한다)의 기준 및 규격으로 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II. CODEX란?

1. CODEX 설립배경 및 정의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1961년 제11차 "FAO Conference"와 제29차 "WHO 집행이사회" 및 "FAO/WHO 합동식품규격에 대한 Conference"의 권고에 따라 1962년에 설립된 "FAO/WHO 합동식품규격 사업단(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의 사업으로 설립된 정부간 (intergovernmental) 기구이다.

2002년 1월 현재 회원국 수는 165개국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1971년에, 북한은 1981년에 가입하여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Codex Alimentarius는 라틴어로 써, Codex는 법령(code), Alimentarius는 식품(food)을 의미하여 전체적으로는 식품법(Food Cod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식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 및 규격 등을 규정한 식품법령이라 할 수 있다.

2. CODEX 기준 및 규격의 특징

CODEX 기준 및 규격은 CODEX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고유의 번호를 부여받아 그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는 규격(Standard), 실행규범(Recommended Code of Practice: RCP) 및 지침(Guideline)이 있으며 또한 농약 및 항생물질 등에 대한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어 있다.

그동안 CODEX 기준 및 규격은 기본적으로 강제적인 성격이 아니라 각국에서 이의 적용여부를 수락(Accept)하여 자국의 식품 관리에 하나의 지침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Recommend)하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UR 협상의 타결로 CODEX의 기준 및 규격은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다. 즉, WTO 협정 중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 measure)”에서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OIE),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을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에서 설정한 기준, 지침 및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간에 이를 조화시킬 것을 기술하여 국가간 식품 교역시 식품검사의 기준 및 규격으로 사용하자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CODEX의 기준·규격은 국가간에 지켜야 하는 강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즉 통상문제 발생시 각국은 자국의 식품관련 기준·규격을 CODEX 기준 및 규격에 일치시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위해평가를 기초로 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1999년 6월 총회 이후 CODEX에서 승인된 기준·규격은 규격(Standard) 204개, 지침(Guideline) 33개, 규범(Recommended International Code of Practice) 44개가 있다.

지금까지 설정된 CODEX 기준 및 규격은 CO-Rom으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회의 일정, 접촉창구(Contact Point) 상황 및 관련보고서는 인터넷 (WWW.fao.org/esn/codex)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한편, CODEX 위원회에서는 1998년부터 그동안의 문서전달방식을 개편하여 전자 문서전달체계(Codex-L)를 통해서 문서전달 및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동 위원회에서는 Codex-L을 통해 각국의 접촉창구, 참관인 자격이 있는 국제기구, 분과위원회 및 집행이사회의 의장, 일부 특정 개인에게만 허용되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한 문서전달방식을 구축하였다.

3. CODEX 목적

CODEX 규정집에 규정한 CODEX의 목적은

- a)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의 공정한 거래관행의 확보,
- b)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조직의 모든 식품규격 작업의 조화 촉진,
- c) 해당 조직을 통하여 설정하는 규격안의 작성순위 결정, 작업의 개시 및 지도,
- d) 규격을 확정하고, 각 정부의 수락후 이를 CODEX 지역 규격 또는 CODEX 세계규격으로 발간하고, 타 기관에 의해 이미 확정된 국제규격 발간
- e) 기 확정·발간된 규격의 개정을 들 수 있다.

즉, CODEX는 전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식품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식품으로 인한 인간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가간 식품의 원활한 교역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4. CODEX 위원회의 조직

CODEX의 조직은 크게 CODEX 위원회, 집행이사회 및 그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1) CODEX 위원회

CODEX 위원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3명의 임원이 있으며, CODEX 총회는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데 2002년 1월 현재 24차례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2) 집행이사회

총회와 총회사이에 CODEX 위원회의 기본 방향 및 작업계획을 제시하거나 총회에서 인정한 사업의 집행을 담당하며 회의는 일반적으로 매년 개최된다.

3) CODEX 하부조직

(가) CODEX 일반과제 분과위원회

총 9개의 분과가 있으며,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모임을 갖고 관련기준·규격 또는 지침 등의 설정작업이나 권고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총회에 제출한다.

○ CODEX 일반과제 분과위원회

- CODEX 일반원칙 (프랑스)
- CODEX 잔류수의약품 (미국)
- CODEX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네덜란드)
- CODEX 잔류농약 (네덜란드)
- CODEX 식품표시 (캐나다)
- CODEX 식품위생 (미국)
- CODEX 분석 및 시료채취 (헝가리)
- CODEX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호주)
-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독일)

(나) CODEX 식품별 분과위원회

각 식품별로 기준·규격을 설정하기 위해 총 11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7개 분과가 활동 중에 있고 나머지 분과는 휴회중에 있으나 필요시에는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 CODEX 식품별 (14개 분과위원회)

- CODEX 코코아 제품 및 초콜릿 (스위스)*
- CODEX 당류 (영국)*
- CODEX 가공과·채류 (미국)
- CODEX 유지류 (영국)
- CODEX 생과·채류 (멕시코)
- CODEX 식물성 단백질 (캐나다)*
- CODEX 식육 및 가금육위생 (뉴질랜드)
- CODEX 곡류 및 두류제품 (미국)*
- CODEX 유 및 유제품 (뉴질랜드)
- CODEX 천연광천수 (스위스)*
- CODEX 어류 및 어류제품 (노르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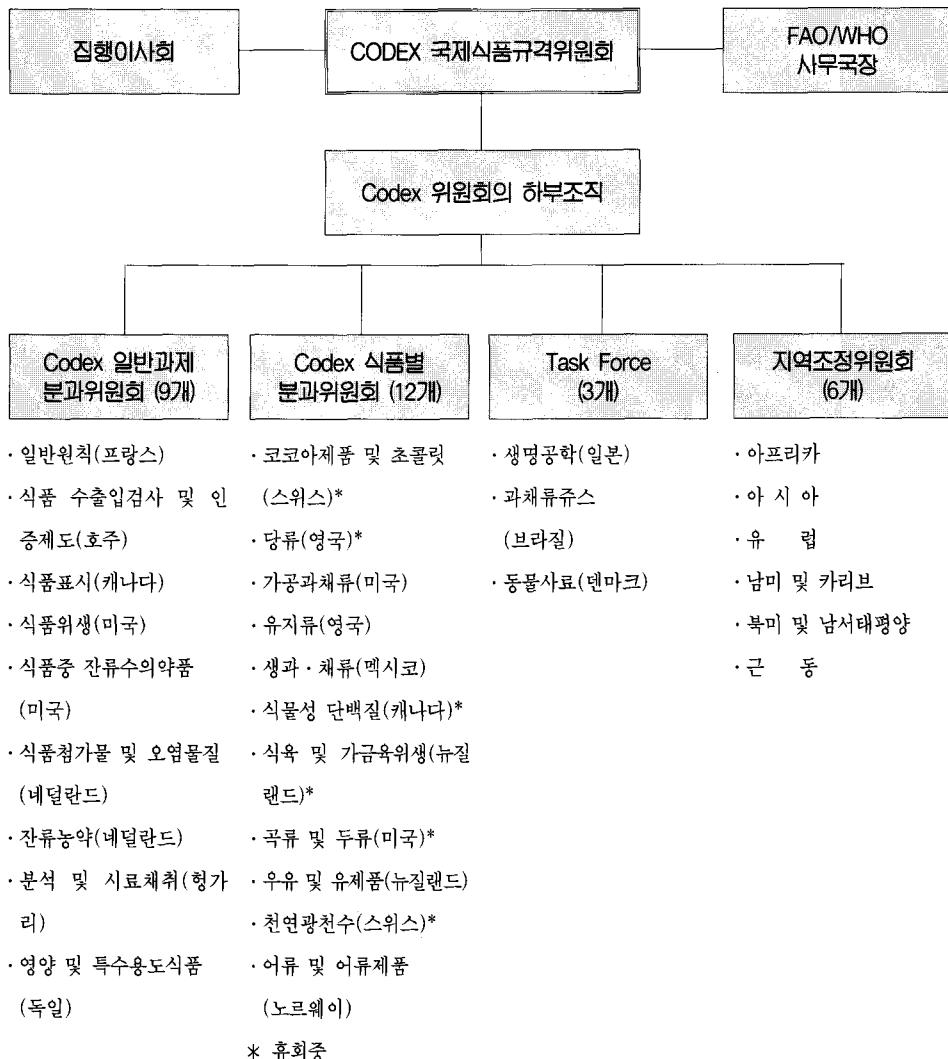
(* 휴회중인 분과위원회)

(다) CODEX 지역조정위원회

지역내의 식품규격의 통합을 촉진하는 기구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및 카리브, 북미 및 남서태평양, 근동의 총6개의 지역조정위원회가 있다.

(라) Task Force

특별사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Task Force는 생명공학(일본), 과채류류(브라질), 동물사료(덴마크)등 3개가 있다.



5. CODEX 기준 및 규격 설정수순

1) 통일수순 - 일반설정 수순

- 제1단계 : CODEX 규격 설정 필요성을 CODEX 위원회에서 결정
- 제2단계 : CODEX 규격초안(Proposed draft standard) 작성
- 제3단계 : CODEX 규격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수렴
- 제4단계 :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CODEX 규격초안 개정
- 제5단계 : CODEX 규격안(Draft standard)으로 확정
- 제6단계 : CODEX 규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제7단계 : CODEX 규격안 개정
- 제8단계 : CODEX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CODEX 규격(Standard)으로 확정

2) 급행수순

- 제1단계 : CODEX 위원회 또는 집행이사회에서 급행수순을 거칠 것을 결정 (참석자 2/3의 찬성 필요)
- 제2단계 : CODEX 규격초안 작성
- 제3단계 : CODEX 규격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수렴
- 제4단계 :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CODEX 규격초안의 개정
- 제5단계 : CODEX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아 CODEX 규격으로 확정

6. 국내 CODEX 활동

우리나라는 1971년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가입하였으나 뚜렷한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1995년 보건복지부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국제규격분과를 설치하여 CODEX 기준 및 규격을 검토·연구하여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관련 부처가 국제식품규격 설정을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기준·규격설정에 대한 아국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 표시기준등의 제·개정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설정한 기준·규격을 최대한 준용하여 국제식품규격과의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라면의 국제규격 설정필요성에 따라 이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관계자 회의를 수차례 가진바 있다. 아울러 1997년부터 식약청 직원을 CODEX 본부(이태리, 로마)에 파견하여 최신의 정보 및 국제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기준·규격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